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다8001 판결 [보증채무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다8001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1. 12. 19 선고 2001나1256 판결

창원지방법원 2000. 12. 15 선고 2000가합3590 판결

전문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최AA

【피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BA물산 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01. 12. 19. 선고 2001나1256 판결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것이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대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8다48934 판결, 2000. 3. 10. 선고 98다2973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1994. 5. 6. 서CA에게 개인적으로 돈 4,000만원을 대여하면서 서CA으로부터 연대채무자란에 피고 회사가 기재되고,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이 찍힌 돈 2,000만원의 차용금증서 2장을 교부받았다는 요지의 사실과 서CA과 서CB과의 관계, 피고 회사가 서CB에게 피고 회사 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도록 한 경위 등에 관한 각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 회사가 서CA의 개인적인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연대채무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에 속하여 원고로서는 서CA에게 돈 4,000만원을 대여하여 줄 당시 서CA이 피고 회사가 연대채무자로 기재된 차용금증서를 교부함에 있어 한 행위가 피고 회사의 정당한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능히 알았다고 보이므로 피고 회사에게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에 비추어 기록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사용자책임의 요건과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다38623 판결 참조), 기록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서CA의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과실비율을 40%로 인정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하여.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 또는 그의 피용자가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또한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의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658 판결 참조).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서CB에게 피고 회사 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도록 허락한 경위, 그 후 서CB이 피고 회사 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여 온 실태, 서CB과 서CA의 관계, 서CA이 그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담당하여 온 업무, 원고가 서C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서CA에게 임차보증금으로 돈 5,000만원을 주고 임대차계약을 교부받은 경위 등에 관한 원심 판시의 각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 회사는 객관적으로 보아 서CA의 사용자로서 서CA이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명의대여에 있어서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2주장에 관하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30367 판결 참조).

기록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서CA의 임대차계약 체결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고에게도 원심 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 서CA의 행위가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모든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는 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용자책임의 면책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중에 내세우는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